

시행세칙



사단
법인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사)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세칙

제 1 장 회무분장

제 1 조(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직무)

- ①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에 의한다. <2006.11.9 >
- ② 회장 유고시는 연장의 등기이사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면 개정 2017.4.27>

제 2 조(이사업무의 분장) 회장, 부회장 이외의 이사 직무별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2.25>

- 1. 총무이사
- 2. 재무이사
- 3. 사업이사
- 4. 편집이사
- 5. 연구이사
- 6. 기획이사
- 7. 국제이사

<신설> 8, 홍보이사 <전면 개정 2017.4.27>

제 3 조(회무의 분장) ① 본회 회무는 다음과 같이 이사가 분담하고, 본회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1. 총무이사 : 인사, 문서, 섭외, 포상 및 서무일반
- 2. 재무이사 : 예산, 결산, 금전보관 및 출납, 재산관리
- 3. 편집이사 : 학회지 편집 및 발간, 학회지 평가관련 업무 <전면 개정 2017.4.27.>
- 4. 사업이사 : 국내학술대회, 강연, 견학, 조사, 좌담회, 기타 사업의 계획 및 집행 <전면 개정 2017.4.27.>
- 5. 연구이사 : 연구의 계획 및 수탁, 출판사업, 편집관련업무 지원 <전면 개정 2017.4.27.>
- 6. 기획이사 : 기획, 강습, 연구회 운영, 총무관련 업무 지원 <전면 개정 2017.4.27.>
- 7. 국제이사 : 국제학술대회 등 국제관련 업무

<신설> 8. 홍보이사 : 소식지 편집 및 발간, 홍보 업무 <전면 개정 2017.4.27>

② 담당 이사의 권한으로 간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4 조(회무의 보고) 이사는 전년도 회무 및 회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조(사무의 인계) 신규임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무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전면 개정 2017.4.27>

제 2 장 위원회

제 6 조(위원회의 설치) 본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전면 개정 2017.4.27.> <개정 2019.4.25>

제 7 조(위원장 위촉) 제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등은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4.25>

제 8 조(위원 위촉) <삭제 2019.4.25>

제 9 조(위원) 제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제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사업완료직후에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업

제11조(회지 및 도서의 간행) 본회는 년 6회 이상 학회지를 발행하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소식지, 기타 도서를 간행할 수 있다. <전면 개정 2017.4.27>

제12조(간행물의 배포) 학회지 및 소식지는 전 회원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기타 간행물의 배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전면 개정 2017.4.27>

제13조(간행물의 기증) 학회지, 소식지 및 기타 간행물의 기증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전면 개정 2017.4.27>

제14조(강연회의 개최) 본회는 매년 2회 이상 강연회를 개최한다.

제15조(강연회의 내용) 강연회에서는 조선해양기자재 및 이와 관련된 산업분야의 학술강연, 일반강연 및 회원의 지식향상을 위한 사항을 발표한다. <전면 개정 2017.4.27>

제16조(견학회, 강습회, 좌담회 등의 개최)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견학회, 강습회, 좌담회, 기타 필요한 행사를 수시로 개최한다.

제4장 포상

제17조(포상의 종류) 조선해양기자재 및 이와 관련된 산업분야의 학문과 기술의 향상 또는 개발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학술상, 논문상, 기술상 및 젊은 연구자상 등을 분야별로 수여할 수 있다. <전면 개정 2017.4.27>

제18조(포상규정)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 5 장 회 원

제19조(회원가입)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회원자격에 해당하는 초년도 회비를 첨부 제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입회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입회자에게 통지하고 회원명부에 등록한다. <개정 2014.3.5>

제20조(자격의 변경) 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 또는 학생회원이 학교를 졸업함으로써 그 자격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신규입회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3.5>

제21조(법인명, 대표자의 변경) 법인회원은 그 법인명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법인체의 분리 또는 합병) 회원이 법인체가 분리하거나 타의 법인체와 합병한 때에는 신자격을 위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3조(회원의 탈퇴) 본회를 탈퇴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퇴회의 승인) 퇴회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회원명부로 부터 삭제하고 퇴회자에게 통지한다.

제25조(퇴학한 자) ① 학생회원으로로서 퇴학한 자는 학생회원에서 제명된다.
② 제1항에 해당한 자가 다시 입회하고자 할 때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권리, 의무) 회원은 회비를 매 사업연도 초 3월 이내에 납입함으로써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27조(정권) ①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정권할 수 있다.

1.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자
2. 본회 정관 및 세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3. <삭제> <전면 개정 2017.4.27>

② 이 규정에 의하여 정권된 자가 있을 때에는 본인에게 통지한다. <전면 개정 2017.4.27>.

제 6 장 평의원

제28조(평의원의 선임) ① 평의원의 정원은 60명(당연직 평의원 제외) 이내로 한다. <개정 2008. 10. 30> <개정 2019.4.25>

② 당연직 평의원은 고문, 현직의 회장, 연장의 등기이사 부회장, 감사(2인), 회장이 지명하는 총무이사과 편집이사(각 1인)는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개정 2006. 11. 9> <개정 2019.4.25>

③ 직선평의원(30명)은 정기총회 2개월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송부한 무기명 연기식 직접서신투표 또는 전자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06. 11. 9> <개정 2019.4.25>

④ 간선평의원(30명)은 상기 직선평의원과 당연직 평의원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6. 11. 9> <개정 2019.4.25>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된 직선평의원 및 당연직평의원을 소집하고 직선평의원 및 당연직평의원은 간선평의원을 선출한다. <개정 2008. 10. 30>

⑥ 평의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차점자 순위로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간접선거로 선출된 평의원의 결원은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개정 2005. 2. 25>

제28조의 1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06. 11. 9 >

제7장 회비

제29조(회비) 회원의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5><전면 개정 2017.4.27>

1. 정 회 원 : 50,000원
2. 학생회원 : 30,000원
3. 단체회원
 - 가. Platinum : 5,000,000원 이상
 - 나. Diamond+ : 3,000,000원 이상 <개정 2023.1.16>
 - 다. Diamond : 2,000,000원 이상
 - 라. Sapphire : 1,500,000원 이상
 - 마. Gold : 1,000,000원 이상
 - 바. Silver : 500,000원 이상
 - 사. 공공(도서관) : 300,000원 이상

제30조(종신회비) 정회원이 매년 회비 납부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경륜과 학식을 갖춘 회원의 학회 활동을 권장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령별 종신회비를 정한다.

1. 40세 이하 : 400,000원
2. 41세~50세 이하 : 300,000원
3. 51세 이상 : 200,000원 <전면 개정 2022.4.8>

제31조 기납의 회비 및 납입분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32조 회원으로서 그 자격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는 그 회계년도에 있어서 회비의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장 고문

제33조(고문의 추천) 전임 회장 또는 정회원 50명 이상의 연서(추천 사유를 명기)로서 추천받은 자는 고문으로 추천될 수 있다. <개정 2006. 11. 9>

제34조(고문의 결정) 고문은 제33조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재석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 이를 결정한다.

제9장 회무감사

제35조(회무감사) 감사는 정기총회에 보고할 당해년도의 회무진반을 감사한다.

제36조(회원장) 이사회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장을 제정하며, 회원은 본회의 각종 회합 시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7조(회원장의 교부) 회원장은 입회자의 성명을 회원명부에 등록할 때에 교부한다.

제38조(회원장의 재교부) 회원장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장 지부

제39조(지부설치) 정회원 20명 이상인 지방에는 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부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전면 개정 2017.4.27>

제40조 <폐지> <전면 개정 2017.4.27>

제41조 <폐지> <전면 개정 2017.4.27>

제42조 <폐지> <전면 개정 2017.4.27>

제43조 <폐지> <전면 개정 2017.4.27>

제44조 <폐지> <전면 개정 2017.4.27>

제45조 <폐지> <전면 개정 2017.4.27>

제46조 <폐지> <전면 개정 2017.4.27>

제47조 <폐지> <전면 개정 2017.4.27>

제48조 <폐지> <전면 개정 2017.4.27>

제49조 <폐지> <전면 개정 2017.4.27>

제40조(규정의 제정) 본 세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규정, 지침 등으로 정한다. <전면 개정 2017.4.27>

제11장 보칙

제41조(세칙개정) 본 세칙은 이사회회의 심의 의결로서 개정할 수 있다.
<전면 개정 2017.4.27.> <개정 2019.4.25>

부 칙

- ①본 세칙은 197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본 세칙은 198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③본 세칙은 1988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④본 세칙은 199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⑤본 세칙은 1996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⑥본 세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⑦본 세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⑧본 세칙은 2003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⑨본 세칙은 200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⑩본 세칙은 200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⑪본 세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 세칙 제28조(평의원의 선임) 1항에 의한 평의원의 정원은 제17대 평의회(임기:2009년-2010년)부터 적용한다.
- ⑫본 세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⑬본 세칙은 201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전면 개정 2017.4.27>
- ⑭본 세칙은 202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